

생물안전관리규정

2015. 12. 30. 규정 제2005호
개정 2017. 10. 16. 규정 제2165호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의 생물안전위원회 및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0.1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안전위원회"란 대학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이하 'LMO'라 한다.)를 다루는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 등 기관 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7.10.16.>
2.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이란 「통합고시」 제9-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대학의 LMO등의 취급 및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생물자원"이라 함은 LMO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10.16.>
5. "LMO"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6. "위해성 평가"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위험병원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근거하여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생물안전"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생물체 또는 생물체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는 포괄적 조치를 말한다.
9. "생물안전관리등급(Biosafety Level)"이라 함은 생물자원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전자변형 작업을 할 때, 해당하는 생물의 위험군에 적합한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4종류의 등급을 말한다.
10. "유전자재조합분자"라 함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11. "유전자재조합실험"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DNA(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12. "LMO연구시설"이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대학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4.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대학 내의 LMO 신고 및 취급 그리고 생물안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별도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실험실 책임자로 임명된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16. "환경 방출"이란 LMO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10.16.>

2장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대학 내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16.>

제5조(기능 및 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생물 관련 연구에서의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연구, 실험, 조사 등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16.>
 2. LMO 관련 시험연구 수행과제별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등급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수의미생물 위험군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등급 3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16.>
 8.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과 실험동물자원관리센터장을 포함한 관련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6.>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한 교원
 2. 의사면허가 있는 교원
 3. 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는 교원
 4. 미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교원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생물안전에 관련된 사항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 중에서 의료 자문을 수행할 의료관리자를 지명한다.
- ⑤ 위원은 심의대상과 본인이 이해관계로 관련되어 있는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경북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②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 관련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 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 승인된 연구계획이더라도 교내 구성원의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LMO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안건이 자문 등 결의성격이 아니거나 수의미생물 위험군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해당 심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에 따라 책임자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물안전관리 LMO전담부서) ① 생물안전관리에 대한 LMO전담부서(이하 'LMO전담부서'라 한다)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한다.<개정 2017.10.16.>

② LMO 전담부서에서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관리

2. <삭제 2017.10.16.>

3. 생물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LMO 수·출입 신고 또는 변경 관련 업무처리<신설 2017.10.16.>

6. <삭제 2017.10.16.>

7.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 또는 변경, 폐쇄 관련 업무처리<개정 2017.10.16.>

8. LMO 개발·실험 승인 관련 업무처리 <개정 2017.10.16.>

9.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의 업무처리<신설 2017.10.16.>

제11조(심의 및 승인) ① 교내에서 LMO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생물 자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의 취소) 위원장은 승인한 연구계획서가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10.16.>

3장 책임과 의무

- 제15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① 생물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자를 두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③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2.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실무
 3.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실무 업무

- 제16조(의료관리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에 관한 의료자문
 2. 교내 생물안전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자문

- 제17조(시험·연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담당교수로서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생물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생물안전교육·훈련 이수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5.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6.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및 기타 중요사항 등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7.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제18조(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는 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생물안전관리자를 도와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내 시험·연구용 LMO 관련 기록대장(관리, 운반, 보관 등) 관리
 2.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점검
 3.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점검
 4.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5.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9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 및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된 지시사항

제20조(교육 훈련)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연구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연 1회 이상(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
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4.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

제21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연구시설 폐쇄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6.>

제22조(시험·연구용 등의 LMO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LMO법 통합고시 제2-1조에 해당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16.>

제23조(연구개발·실험의 승인·변경·취소) 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험·연구용 LMO의 연구 개발·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구개발·실험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승인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에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받은 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1. LMO의 연구개발·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했을 경우
2. 본교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신설 2017.10.16.>

④ 시험·연구책임자는 승인받은 연구가 완료되었을 시 1개월 이내에 연구의 종료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를 수출하려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자체 시설 생물안전관리

제25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분류는 LMO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1, 2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분류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등급 연구시설: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LMO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2. 제2등급 연구시설: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LMO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26조(LMO연구시설의 설치) LMO 등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LMO법에 따른 적합한 연구시설을 신고(또는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전담부서에 사전·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허가신청)서
2. 연구시설 설치·운영점검결과서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6. 해당 연구시설의 평면도
7. 해당 연구시설의 건축물대장 사본<신설 2017.10.16.>

제26조의2(LMO연구시설의 폐쇄)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전담부서에 사전·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6.>

1.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2. 폐쇄사유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27조(LMO연구시설 등 관리) ① LMO를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전담부서에 사전·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계약서<신설 2017.10.16.>

② 위해성 있는 생물안전등급을 설치·운영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관리대장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관리대장

③ 상기 항 이외에도 연구시설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안전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LMO법 및 통합고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제28조(연구시설의 책임자 및 운영자) <삭제 2017.10.16.>

제29조(LMO의 사용) ① LMO법 제2조에서 정의한 LMO로서, 생물자원의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 위험도 및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군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류에 따른 생물자원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등급 분류는 LMO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어로졸(aerosol) 등 미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17.10.16.>

제30조(연구시설 준수사항) ① 연구시설은 실험의 종류에 따라 일반, 동물, 식물, 대량배양, 격리포장 연구시설로 나누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② 시험·연구책임자는 LMO를 개발 또는 실험 시 LMO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 및 「경북대학교 실험폐기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사고 시 조치) ① LMO를 취급하던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 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시험·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시설 소속기관의 장 및 설치·운영책임자는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 사용 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③ 시험·연구책임자는 LMO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④ 교내 LMO와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의 원인 및 책임 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며 사후대책을 수립한다.<신설 2017.10.16.>

제33조(준용) ①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정부 7개 부처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폐기물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관련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 실험실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실험실생물안전취급서(Laboratory biosafety manual)」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안전관리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6호, 2013.3.23)을 따른다.

제34조(표준운영지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칙 (규정 제2005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65호, 2017. 10.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